

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삼천 6호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11. 24

제 출 자 : 파주시장

☐ 수정이유

제 4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와 집행부간 심도있는 검토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므로써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 임

☐ 주요골자

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의 조성목표액 및 조성기간을 조례상에 별도로 정하지 않던 것을 조성목표액을 20억원으로 하고 조성기간은 2001년부터 5년의 기간으로 정함.

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수정안

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관리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.

안 제3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기금의 조성목표액은 20억원으로 하며 조성기간은 2001년부터 5년의 기간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제 3조 (기금의 설치) ①시장은 농업 전문 인력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.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(이하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 한다. <u><신 설></u>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.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.	제 3조 (기금의 설치)①(원안과 같음) <u>②기금의 조성목표액은 20억원으로 하며 조성기간은 2001년부터 5년의 기간으로 한다.</u> ③ (원안 제 2항과 같음)